등록번호	미래교육과/06						
등록일자	2025.	/.	3.				
결재일자	2025.	1.	3.				
공개구분	귱	74					

담당자	에듀테크담당	미래교육과장	정책국장
公出于	到开红	211年	沙子
협조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시회 구현」 2025년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스마트폰 괴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

2025. 1.





##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시회 구현, 2025년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

2025.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정책국 미래교육과

# 목 차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체계3
Ⅲ. 주요내용4
IV. 세부 추진 계획
1. 교육과정 중심 정보통신윤리교육4
1-1.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4
1-2. 학생 주도의 건전한 정보활용 교육6
1-3.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 홍보7
2.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8
2-1.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8
2-2. 교원 전문성 강화9
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내실화10
3-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 10
3-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 12
3-3. 정보통신윤리 학생 교육 자료 개발 13
V. 예산현황 13
VI. 기대효과14
VII. 별첨 ······ 14

####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 2025년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 예방교육 기본계획

미래교육과

## I 추진개요

### 1 추진근거 및 배경

#### □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제44조(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지능정보서비스 과 의존의 예방과 해소),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 O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
- O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추진배경

- O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역기능 양상에 선제적 대응
  -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면서 생활 편익 증대\* 라는 기회와 이용자 선택권 침해\*\*라는 위험 병존
  - \* 각종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 개인 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시실을 인식 못하는 권리 침해 문제,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 등
    -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이용자 데이터 수집이 유리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역기능 확산\*을 조장
  - \* 이용자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지능형 서비스 전략으로 콘텐츠의 무분별한 소비 조장 가능

#### 〇지능정보기술 보편화에 따른 이용자 역할의 확장

-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는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 매개자 · 생산자로 역할 확장

#### 예전의 이용자

- 콘텐츠의 수동적 소비
- ·국가가 제시하는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
- · 과의존, 사이버범죄 등 역기능에 대한 보호 대상



#### 오늘날의 이용자

- ㆍ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 매개
- SNS 공유 기능 일반화, 인플루언서 등장
- ㆍ지능정보기술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
- 이용자의 모든 활동이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
- ·콘텐츠 생산 및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 활동
- 유튜버 등의 콘텐츠 생산 및 광고수익 창출 활동

### 2 추진방향

#### □ 교육과정 중심의 정보통신윤리교육

- O 정규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교과교육 시간)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운영
- O 스마트기기 및 매체의 이용 억제 대신 바른 사용 및 역량 강화 중심 교육
  - ※ 일회성 행사 중심 및 전체 전달 강의 방식의 교육 방법을 지양

### □ 에듀테크 수업 확대로 교육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역기능 해소

O 매체 노출 시간 증대에 따른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 에듀테크 수업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

#### □ 과의존 예방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문화 확립

- O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능력 함양을 통해 건강한 이용 문화 조성
- O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을 위한 학생-학교-가정-유관기 관 협업 체계 구축

## [비전]

##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 [목표]

##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

	추진 과제	주요 추진 내용
		1-1.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1	교육과정 중심 정보통신윤리교육	1-2 학생 주도의 건전한 정보활용 교육
		1-3.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 홍보
		0.1 THE HOUTE THE OM
2	건전한 시이버 문화 조성	2-1.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
		2-2. 교원 전문성 강화
		3-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3	인터넷 · 스마트폰 교의은 예방교육 내실화	3-2. 인터넷·스미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3-3. 정보통신윤리 학생 교육 지료 개발

## Ⅲ 주요 내용

영역	내 용	시기
	■정보통신윤리교육시간 확보 및 교육 실시( <mark>의무교육</mark> )	
교육 과정 시수 확보	- 유치원: 연 1시간 이상 - 초·중·고 학생: 학기별 2시간(연 4시간) 이상 ※ 교육실적 제출: (1차)정보공시 자료로 대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 : 안전교육영역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사이버중독예방교육)	연중
	- 교사학부모: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 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교육, 게임·도박 중독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보호 등	
홍보 캠페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실시 -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신청기관(30교) -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전통놀이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 활동	연중
수업 연구회	■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연구회 지원 - 지원액: 3,000천원*5팀=15,000천원	4월 ~ 12월
인터넷 · 스마트폰	<ul><li>●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실시(주최: 여성가족부)</li><li>-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체계적 발굴 및 사후 관리 계획</li></ul>	4월 ~ 5월
과의존 예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유관기관 협력 구축 및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 마련	연중

## □ 교육시수 확보 관련 근거 : 4시간 ← 4회(최대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 O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관련 교육 4회 이상(학기당 2회 이상) 시행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2항 및 시행령 제50조2항(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 「유이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u>연 1회 이상</u>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반기별 1회 이상 (연간 2회 이상)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2021.07.14)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학기당 2회 이상

## Ⅳ 세부추진계획

- 1 교육과정 중심 정보통신윤리교육
- 1-1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 □ 단위학교「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계획」수립 추진
  - O (계획수립) 학교 여건과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연간계획 수립
  - O (교육시수) 학생·교사학부모 교육 컨텐츠 및 시수 확보
  - (유치원) 연 1시간 이상
  - (초·중·고) **학기별 2시간(**연 4시간) 이상
  - ※ 교육실적 공유가능 : 안전교육영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사이버중독예방교육)
- **(교사, 학부모)**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 O (교육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교육, 게임·도박 중독, 개인정 보보호 저작권 보호 등
  - ※ 학생 생활지도와 연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 O (교육방법)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별도확보 또는 교과연계 지도
- O (담당자 지정) 정보통신윤리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업무 담당교사 지정·운영
- O (자료제출) 다음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시 결과 자료 제출(필수)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 →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사이버중독예방교육) → 정보공시 자료로 대체함,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24년 자료 → '25년 1차 정보공시 입력)
- ※ 정보공시 자료 미입력(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
  -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실시현황조사 결과 **부실기관** 으로 지정되며,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교사·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 O (실시회수) 학기별 1회 이상 (연2회 이상)
- O (활용시간) 교무회의,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회의, 학부모교실 운영,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O (방법) 동영상 자료, 특강, 훈화, 상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 학교 단위 학부모 교육 실시
    -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교실 운영 시 정보통신윤리교육 필수 실시
    - 가정통신문 발송,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 안내
- 가정에서 인터넷 안전하게 사용하기 등의 가정규칙 만들기
  - PC 거실에 놓기, 컴퓨터 이용수칙 만들기, 집안에서는 스마트폰 꺼두기
  -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설치하기
- 단위학교별 「학부모 정보 모니터단」 등 자율 운영 및 학부모 참여 유도
  - 학교 홈페이지 모니터링, 유해 사이트 감시 등
  - 결손가정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 1:1 결연 상담 활동

#### □ 정보통신윤리교육실시 결과 제출

- O (제출기한) 2025. 12. 12.(금)
- O (제출방법) 자료집계
- 유·초·중학교: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 ※ 병설유치원 실시 결과는 소속 초등학교 자료집계 제출시 행추가하여 함께 제출
- 고·특수학교: 학교→도교육청
  -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교실 운영 시 정보통신윤리교육 필수 실시

### 1-2 학생 주도의 건전한 정보활용 교육

#### 목적

- 건전한 정보활용과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함양
- 학생들의 자율적인 규칙 제정과 운영으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법을 스스로 찾아 실천하도록 하며, 스마트폰 이외의 다양한 또래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스마트폰 과몰입과 과의존을 예방

### □ 내용 및 방법 [자율적 선택 및 운영]

- O 스마트폰 이용 자율실천규칙 제정 · 운영
- 학생자치회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급 규칙 제정 유영
- O 스마트폰 이별주간 운영
- 일정기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활동 운영
- 참여 규모(학교, 학급)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 계획 수립
- O 스마트폰 바른 사용 캠페인 운영
  -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과다사용의 위험을 경고하는 다양한 문구를 게시하여 스마트폰 바른 사용에 대한 의식 제고
  -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표어 · 포스터 대회 개최
  - 우수작품을 게시물로 제작하여 학생 생활공가에 게시

### 1-3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 홍보

#### \_ 목적

O 단위학교의 다양한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관기 관의 제공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강화

#### □ 유관기관 및 프로그램

O 에듀넷(www.edunet.net): 에듀넷 바로가기 - 수업사례, 교과연계 콘텐츠, 유관기관 교육자료, 교원연수, 학부모 교육자료, 진단평가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 탑재

- O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인터넷 스마트폰 레몬교실, WOW 건 강한 멘토링, 상담교사 전문연수, 진단조사, 중독 상담 등 인터넷·스 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 탑재
  - \* 지역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직영 스마트쉼센터 (https://www.jicc.or.kr/)
- O 배움나라 (www.estudy.or.kr): 정보화역기능예방 특강, 스마트미디어 중 독예방 콘텐츠, 교사용정보윤리지도서 등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학 생·학부모·교사 대상의 교육자료 탑재
- O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특별자치도센터 (www.kcgp.or.kr ) :예방콘텐 츠, 홍보 콘텐츠 등 교육자료 탑재
- O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jb1388.kr): 인터넷・스마트폰 과의 존 조사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안심존(앱) 희망학교(cr.kcup.or.kr): 사이버안심존 앱과 스마트폰 이용 상담 관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관리하고 과의존을 예방, 학부모·학생 대상 강사파견 무료 교육 지원

### 2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 2-1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

- □【목적】정보통신윤리 관련 교육홍보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치유상담 등 집중교육 운영
- □ (운영기간) 6월 셋째 주
  - ※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계획 등을 감안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 운영 가능

#### □ 운영방안

- O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이버중독, 사이버폭력 예방 등 관련 인식 개선(학교 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
- O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학교 홈페이지 점검 (저작물 이용실태),

학생들의 각종 SNS 업로드 글 등 자체 점검 안내 및 실시

- O 유관기관의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치유 관 런 프로그램 적극 활용
- O 사이버폭력 예방과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주간의 취지 홍보 및 캠페인\* 활동실시
  - \*선플달기(https://www.sunfull.or.kr/),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http://ainse.kr) 등
- O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과 SNS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홍보 및 유관기관/지역기관 활용 안내
- O 수업 지도안 등은 에듀넷에 탑재된 관련 학습지도안\* 중 활용 가능한 지도안 및 학습자료를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 활용
  - \* [에듀넷]-[교육정책]-[사이버폭력예방교육]-[사이버폭력예방·정보통신윤리교육]
-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토의 중심 수업, 역할극·글짓기·삼행시·UCC 등 다양한 학예행사, 가족·친구 서약식, 거리 캠페인 등 실시 가능

### 2-2 교원 전문성 강화

#### □ 정보통신윤리교육 상시 원격 연수 과정 운영 [전북교육연수포털]

분야	시간	대상	과정명
디지털 리터러시	15차시	초·중등 교원	소통과 공감의 수업 만들기 게임리터러시 교육
정보통신 윤리	15차시	초·중등 교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교육연수원 및 미래교육연구원 연수 추후 협조 진행 예정

#### □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연구회 지원

- O (목적) 교육현장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도박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교원 중심의 교육활동 연구 및 확산 기반 제공
- O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수업연구회 5팀
- O (시기) 2025. 4월 ~ 12월
- O (예산) 15,000천원 (팀당 3,000천원)

### 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내실화

### 3-1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 □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O (목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이용 습관 개선 유도
- O (대상) 초1, 초4, 중1, 고1 (생애 전환기 학년)
- O (시기) 2025년 3~4월

단계	일 정(예정)	주요 내용
	2월 중	- 학교담당자 지정 및 개인정보 제출, 자료집계 시스템 자료입력으로 제출
▶ 사전준비	3월 중	- 학부모 사전안내
	3월 중	- 학교별 패스워드, 학급 수 및 인원 등록
	3월~4월	- 진단조사 실시
▶ 진단조사실시	4월 중	- 보호자 동의서 확보 후 시스템입력 - 공존질환검사(온라인 및 오프라인) 요청
	4월 중	- 공존 질환검사 실시 및 회송 초등(오프라인 실시) 중등(온라인 실시)
▶ 치유서비스지원	4월~12월	위험군학생 공존질환검사 부모동의학생 : 개인· 집단상담, 치료연계, 기술치유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sup>※</sup>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O 검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O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예방교육, 상담 및 치료지원, 학부모동반 상담
  - 고위험군 학생 대상 공존 질환보유 여부 검사 실시
  - ※<u>학부모 동의</u>를 얻어 학교 담당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신청
  - 상담치료 방향 : 위험사용자군 및 주의사용자군 학생에 대해 학교 책임 상담

#### □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 학생 관리

- O (목적) 인터넷 ·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상담 · 치료 과정 및 치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위험학생의 중독 해소 지원
- O (사업내용) 진단조사 결과를 반영한 위험 사용자군 관리 계획 수립
  - **진단조사 결과**: 별도 보안문서로 저장관리(진단조사 이후 홈페이지 차단)
    - ※ 위험사용자군이 없는 경우 주의사용자군에 대한 예방교육 계획 수립으로 대체

#### O 사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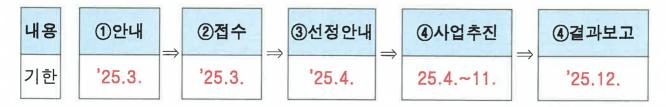
- 인터넷·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 관리 계획 수립
  - 위험사용자군, 주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현황(전년도 비교분석)
  - 상담 · 치료에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의 세부 현황
  - 위험사용자군 학생별 멘토(상담교사. 담임교사 등) 지정 및 상담 계획
- 위험사용자군 학생 사후조치 관리
- ※ 위험군학생 공존질환검사 학부모 미동의학생 : 외부상담 요청 등 학 교별 별도 프로그램운영 지도
- 멘토(상담교사, 담임교사 등)를 통하여 정기적 상담 실시(분기별 1회)
- 학교 상담 및 상담 · 치료과정 등 현황 파악
- 고위험군 전문상담·치료 양적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특별상담 실시

## 3-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 □ [목적] 올바른 ICT 사용문화 및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을 통한 과의존 예방 및 해소
- □ 【내용】전통놀이와 상담을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 □ (시기) 2025. 4월 ~ 12월
- ☐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희망학교 30개교
- □ [세부내용]

구 분	소요시간 (120')	행 사 내 용	비고
	10'	• 과의존 예방교육 및 활동 준비	
홍보캠페인	30'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과의존에 대한 이해 및 바른 사용 습관 형성 교육	
	40'	• 스마트쉼센터 기관 홍보 및 상담실 운영 -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 진단검사 및 해석 - 바른 스마트폰 사용 다짐(스마트폰 쉼 바구니 만들기)	
	40'	• 체험활동 - 스트링아트, 드림캐쳐 만들기, 걱정인형 만들기 (대상, 인원에 따라 한가지 활동 진행)	

- ☐ [운영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홍원(전북특별자치도 직영 스마트쉼센터, www.jicc.or.kr)
- 🔲 [추진일정]



### 3-3 정보통신윤리 학생 교육 자료 개발

- □ 【목적】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함양을 통해 건강한 이용 문화 조성
- □ (내용)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학습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 자료 개발
- □ (시기) 2025. 3월 ~ 8월

#### □ (세부내용)

- 주요내용: 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방법, 디지털디톡스, 인 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자기진단, 인공지능 윤리 등
- O 배포방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부서자료실 웹툰 연재(매월 1일) 및 e북 제작(8월) 배포

#### □ (기대효과)

- O 건전한 디지털 수업 문화 정착으로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 O 바람직한 스마트기기 이용 습관 정착으로 학교문화 개선

## Ⅴ 예산 현황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실시: 30,750천원
- □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연구회 지원: 15,000천원
- □ 정보통신윤리교육 학생 자료 개발 1종: 11,300천원

## VI 기대 효과

- □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한 건전한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 □ 교과 콘텐츠와 맞춤형 콘텐츠의 보급을 통한 정보통신윤리교육 내실화
- □ 유관기관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공동 대응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 바람직한 스마트폰 이용 습관 정착으로 학교문화 개선
-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으로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 VII 별첨

- □ [별첨1] 분야별 참고 사이트
- □ [별첨2] 부처별 프로그램 안내
- □ [별첨3] 관련 법령 및 근거

## □ [별첨1] 분야별 참고 사이트

분야	관계기관	사이트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연수원(원격연수)	https://jbstudy.kr		
저버트시	▶아름다운인터넷세상 [방송통신위원회][NIA:한국정보화진흥원]	https://www.아인세.kr/		
정보통신 윤리교육	▶도란도란 - 에듀넷티클리어 교육자료	https://doran.edunet.net/		
	▶온국민평생배움터	https://www.all.go.kr		
	▶스마트쉼센터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www.iapc.or.kr/		
사이버중독 관련사이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https://www.kcgp.or.kr/		
00/10/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http://www.jb1388.kr/		
	▶인터넷침해대응센터	http://www.krcert.or.kr/		
유해사이트	▶ 안랩	https://www.ahnlab.com/		
감시활동 및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신고센터	▶학부모정보감시단	http://www.cyberparents.or.kr/		
	▶한국사이버감시단	http://www.wwwcap.or.kr/		
기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http://www.computerlife.org/		
71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그이	▶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	http://www.netaddiction.com/		
국외	▶ Prof.Greenfield homepage	http://www.virtual-addiction.com/		

## □ [별첨2] 부처별 프로그램 안내

부처	구분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레몬교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과정	유·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WOW 건강한 멘토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심화과정	초·중·고교생		
과기	교육	다 함께 꿈 <del>톡톡</del> !!	∘체험형 ICT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학생		
정 <del>통</del> 부		온라인 콘텐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학습	유·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온라인 교원직무연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교육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상담	개인·집단·기정방문상담	· 과의존 문제상담, 예술·놀이치료, 대안활동	유·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7.0	학부모 게임문화 인식 제고 교육	·게임 인식 제고, 게임 이용 지도 교육	초·중교생 학부모		
문체부	교육	게임리터러시 교사직무연수	·게임 리터러시 직무연수 및 선도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캠프	게임문화 기족캠프	·게임 과몰입 예방, 게임 제작 체험 통한 진로탐색	청소년, 학부모		
산자부	앱서비스	세모달 앱서비스	·스마트폰 바른 사용 학습 기능 제공	초등 저학년 학부모, 교사, 상담사		
복지부	교육	중독예방교육	·뇌의학기반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교육	보건교사, 상담교사		
	상담 치료연계	공존질환 검사	·공존질환(우울증, ADHD 등) 보유 선별검사	청소년		
		괴의존 위험 수준별 상담	·대상특성, 과의존 위험 정도에 따른 맞춤형 개안집단 상담	청소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종합심리검사, 병원연계·치료지원	청소년		
여기부	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과외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상설 치유기관 운영	청소년		
	기숙치유	인터넷치유캠프·기족치유캠프	·치유활동, 체험활동, 대안놀이 등을 결합한 기숙치유캠프	청소년, 기족		
	교육	스미트폰 과의존 청소년 부모교육	·위험군 청소년 학부모 대상 예방가이드 교육	학부모		
	조사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 및 위험도 파악	초1·4, 중1, 고1 학생		
			다. (1) 조심에서(N)M2 네바 링 후 조직도 포크마.	5 T == 0 44 = - 1		
HIE OI	교육/	사이버안심존	∘사이버안심존 SW 활용 스미트폰 역기능 예방 교육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방통위	SW보급		·스마트폰 과이존 상담관리 프로그램 소개 및 이용방법	교사		
		그린아이넷 •PC용 불법 유해 정보 차단 SW 보급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도박문제 예방교육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유·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시감위	예방 교육	문화콘텐츠	·영화, 애니메이션 형식의 예방교육 콘텐츠	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연극	▽문화콘텐츠(연극)를 통한 도박문제 예방	중·고교생		

### □ [별첨3] 관련 법령 및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제44조(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지능정보서비스 과 의존의 예방과 해소),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 O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
- O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지능정보화기본법

####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 3.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 한다.
-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 · 보급
-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13조 및「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 3.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 4.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 ①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의 결과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공시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 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한다.
- 1.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 2.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원감
-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교무부장
- 4.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 5.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소속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운영
-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 3. 그 밖에 현장점검 대응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점검한 결과 별표 6에 따른 이수기

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대상기관 관리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라 한다) 을 이수해야 한다.
-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기관 및 교육대상기관 관리자의 역할
-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학교인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 ②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 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소속 직원
-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 는 자

제5조(실적보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증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 2.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 3.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 5. 그 밖에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매년 4월 1차 정보공시 입력자료(예시)

■ ① 안전교육 실시 현황

100

					2022	학년도					
			안전교육 영역								
7분		생활 안전교육	교통 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중독 애방교육	지능정보서 비스 과약존 관련 교육	재난 안전교육	직업 안전교 <del>육</del>	용급처치	전체 학급수	전체 학생
	1학기										
시간(단위활 동,차시)	2학기										
	함계										